

초고속망 사업자 승인제도(안) 관련 건의서

우리협회에서는 지난 5월 22일 '96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자 승인제도와 관련하여 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동 승인제도(안)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정보통신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.

사업참여 조건 완화

건의이유

- WTO 체제하의 국제화,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초고속망사업의 조기활성화 필요
- 초고속망 서비스는 막대한 투자, 양방향 및 다양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자금력 및 서비스 개발능력을 보유한 민간업계의 참여가 우선 고려 되어야 함
- 따라서 초고속망사업 진입규제완화가 필요함.

건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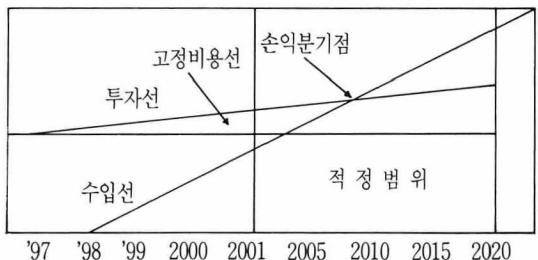
- 민간업계 참여촉진을 위한 관련법령 조항 개정 요망
 -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5호
 - 종합유선방송법 제4조 (겸영제한) 규제완화
 - 종합유선방송법 제6조 (외국자본의 유입제한)

사업대상지역 확대조정

검토내용

- 국내 모기업의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2010년 이 후에나 겨우 손익분기점에 이를 것으로 추정

초고속망사업 예상 손익분기점 추정 도표



※ 사업대상지역 사업성 분석(별첨1참조)

건의이유

- 현행의 국한된 사업대상지역에서의 수요창출이 불확실하며 막대한 초기 투자에 비해 회수기간이 장기화 되는 등 사업성이 미약함.
- 초고속망사업자는 보편적 서비스제공의 의무, 소유지분제한, 상호접속, 요금인가, 중요통신설비의 설치승인 등에 대한 의무가 과중한 반면 사업대상지역이 너무 협소하여 수익전망이 불투명함.
- 신공항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중소 공단지역의 수요전망 불투명

전의사항

- 사업대상지역을 인접지역까지 확대하여 일반 가입자에게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지역을 확대 조정
- 초고속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통신 망과의(상호접속, 망간관계, 요금 등)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함.

초고속망 관련 각종 지표 및 기술보급

전의이유

- 사업참여의 타당성 검토 및 추진상의 비용 손실 방지
- 초고속망의 통신 프로토콜 표준화 및 관련장비 접속시 호환성 등 기술적 가이드라인 부족
- 초고속망 구축을 위한 기간통신망의 정보공개 미흡

전의사항

- 초고속망 관련 각종 지표, 호환성을 위한 표준화 추진 등 기술적 가이드라인 제시
- 기간통신망의 전국망, 사업대상지역의 관로 및 선로, 통신망사용 가능 여부 등의 정보공개
- 승인지역 이외의 지역에 서비스시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 및 해당지역 사업자와의 관계정립 장치 필요(예 : 전화역무제공 등)

일정조정 및 승인절차 개선

전의이유

- 신규통신사업 신청에서 탈락한 업체가 초고속망 사업에 참여코자 할 경우 시간적 여유 부족
- 현재까지 구체적인 승인절차의 미확정
- 선접수 우선승인에 따른 탈락기업의 기회비용 손실 및 경쟁제한으로 인한 불이익

전의사항

- 승인제도의 확정이후 사업타당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신청접수 일정 연기

- 심사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 및 자료공개
- 비용구조 및 원가추정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

금융세제 지원대책 강구

전의이유

- 막대한 초기투자 및 회수의 장기화 등 수익성 불투명에 따른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 지원책이 필요

전의사항

- 초고속망사업자 여신규제 완화 및 지원 강구
- 초고속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(법인세, 소득세, 조세감면법 등)
- 정보화 촉진기금 지원 검토

기타

통신망 임대료 산정기준 마련

- 기간통신망의 임대료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
- 설비제공 상호접속료 기준 필요
- 전용회선 개념의 DS3, STM1급 이상의 이용요금 기준 필요

초고속망 개별서비스 요금 가이드라인 제시

정부에서 초고속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델링 제시

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의 독점정보 공개

- 신공항에 대한 민간업계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의 독점정보 공개
- 초고속망사업자와의 관계정립 장치 필요
- 케이블TV 미허가지역에 초고속망사업자도 사업 참여 허용

기존의 GROUP-VAN 등의 특성상 초고속망으로의 일괄통합 수용의 어려움 예상 ●